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CP운영지침’이라 한다)은 포스코플로우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과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기본원칙)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4. “경쟁당국”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5.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사내 제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8.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 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9. “담당 부문”이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감독하는 실 단위 소속부서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는 그룹단위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해당 그룹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 선임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 소지가 높은 현업 부서의 자율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

제 4 조 (최고경영자의 의무)

최고경영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기업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최고경영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고경영자는 CP 운영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2. 최고경영자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3.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와 권한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고경영자와 이사회는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임원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지식이 풍부하거나 CP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관리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4.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5.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6.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권한

7.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8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3. 주요 자율준수활동 및 사안에 대해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의무

제 9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관리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4.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5.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6. 자율준수활동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대표이사 직접 보고
7.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8.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9.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0.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11. 자율준수 활동 등에 대한 기록 유지
12.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3절 자율준수담당자

제 12 조 (자율준수담당자 등의 업무 및 역할)

1.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보조
 - ②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실무 수행
 - ③ 공정거래 관련법규 정보 수집 및 제공
 - ④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의 작성, 운영, 관리
 - ⑤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자율준수제도 관련 직원 교육 및 상담
 - ⑥ 공정거래 관련법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 ⑦ 자율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
 - ⑧ 내부 제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 ⑨ 자율준수 운영 관련 문서 관리
 - ⑩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하여 사전심사하며 위반사항을 확인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 ⑪ 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및 평가 등 시행
 - ⑫ 상기 이행결과를 수시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보고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업 부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1차적으로 점검
- ② 현업 부서에 발생하는 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배포하는 공정거래 자율점검(체크리스트)을 통한 자체 점검 실시
- ④ 공정거래 준수 위반사항 발견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담당자에게 보고
- ⑤ 제1호 내지 제4호 관련 내용의 기록 유지

제 13 조 (주관부서의 지정)

1.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 전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부서의 책임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제4절 임직원

제 14 조 (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협의회

제 15 조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1.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자율준수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준수협의회를 개최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가 판단하여 위촉한다.
3. CP전담부서의 책임자는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제 16 조 (자율준수협의회 역할)

자율준수협의회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심의·요구
4. 기타 자율준수 문화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7 조 (자율준수협의회 소집 및 의결)

1.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소집하며, 2인 이상의 위원 요청에 의해 개최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등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는 위원 과반수로 개최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를 경우에는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절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제 18조 (CP기준)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 19 조 (선언)

1.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는 모든 임직원에게 전달되도록 공지한다.

제3절 자율준수편람

제 20 조 (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배포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위험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은 CP 주관부서가 판단하여 임직원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하고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5.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한다.

제4절 내부 감시 체계

제 21 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

1.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적법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여 리스크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주관 부서의 점검과

공정거래 자율준수실천리더의 부서별 공정거래 자율점검으로 실시한다.

3. CP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위반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 상시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CP주관부서는 모니터링 및 감사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며 (사안에 따라 경영진에게도 보고 가능)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한다
5. 점검 절차 및 시행 방법은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2 조 (공정거래 위험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법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 등의 확인을 위한 위험 평가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의 리스크등급은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며, 리스크등급이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 경감 또는 제거한다.
3. 공정거래 위험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실시 회차 및 기간
 - ② 시행의 주체(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 ③ 평가 대상 부서(선정기준 포함)
 - ④ 평가 결과(사업부서별, 임직원별 등)
 - ⑤ 미비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제 23 조 (직접보고체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자율준수 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최고경영자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4 조 (내부제보시스템)

1. 내부제보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
 - ②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및 신분노출 행위
 - ③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④ 기타 회사의 내부지침에 어긋나는 행위
2.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시스템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담당자는 내부 제보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프로그램

제 25 조 (교육의 책임과 권한)

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주로 교육하여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교육계획에 근거한 정기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자율준수담당자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교육실행 전 계획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② 교육과정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교육일정을 통보한다.

- ③ 교육자료를 구성하며, 교육실시 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 ④ CP주관부서로부터 교육대상으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미이수한 임직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교육을 미이수한 임직원에게는 그 사실을 부서장에게 통보(주의) 조치 한다.

제 26 조 (교육의 절차)

자율준수 교육은 아래의 기본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별 주제, 일정, 대상자 등을 선정한다.
2. 교육대상자 통보: 자율준수담당자는 교육과정의 종류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3. 교육진행: 교육진행은 자율준수담당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부서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교육결과보고서: 자율준수담당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5. 교육문서 보관: 교육자료, 참석자명단 등 교육관련 문서는 자율준수담당자의 책임하에 이를 보관 및 관리한다.

제 27 조 (교육의 실시)

1. 자율준수담당자는 특히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담당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CP 주관부서는 교육 후 피교육자의 이해도, 만족도, V.O.C, 참석율 등의 파악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

제 28 조 (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지침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제 29 조 (교육 강사의 기준)

교육 강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사내강사: 공정거래 CP업무경력 2년 이상 또는 CP관련 자격증 취득자
2. 사외강사: 공정거래 CP관련 전문가(변호사 또는 공정거래 관련 전문 기관 종사자 등)

제6절 제재 및 포상

제 30 조 (제재의 원칙)

1.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규에 의거하여 인사 제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제재에 대하여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제 31 조 (제재의 절차)

1.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율준수협의회에 보고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는 위반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2 조 (포상)

1.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범적으로 공정거래 준수를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 우수 조직
 - ② 자율준수협의회 우수 위원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
2. 포상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절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제 33 조 (효과성 평가)

1.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마련한다.
2. 효과성 평가에는 주요 운영프로그램의 대한 실행 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CP 운영 효과성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① 공정거래 CP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 ②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자격 또는 공정거래 CP 관련 자격 소지
 - ③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1회 이상

제8절 문서관리

제 34 조 (문서관리 기본원칙)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 35 조 (관리대상 문서)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문서
3. 자율준수편람
4. 내부 감독활동 관련 문서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문서
6. 자율준수 교육결과보고서
7. 공정거래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보고서
8. CP운영 효과성 평가 보고서
9. 자율준수활동과 관련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10.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자료 등

제9절 기타

제 36 조 (제정·개정)

이 지침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 37 조 (운영상황 공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대내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 38 조 (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39 조 (경쟁당국과의 의사소통)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담당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제 40 조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지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시기) 이 지침은 2024년 7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내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은 회사의 관련 지침보다 우선한다.

[2022.04.08. 개정]

□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 자율준수협회의 구성 조건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 역할 등을 정립
- 공정거래 자율준수 CP포상 기준을 제정하여 사내 CP활성화 제고

[2022.08.26. 개정]

□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 최고경영자 및 자율준수관리자 등 CP담당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을 정립하고 세분화 하여 공정거래 운영에 대한 효과성 증대
- 자율준수협회의 구성 조건 및 역할 등을 재정립하여 실질적인 협의회 기능을 추가 함
- 현재 운영 중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준과 절차를 지침화 하여 소속 임직원이

-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함
- CP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2023.06.12. 개정]

□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 효과적인 CP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CP교육 효과성 평가 기준 정립
- CP교육 강사 기준 정립을 통한 CP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 CP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자의 기준을 정립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2024.08.01. 개정]

□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을 위한 기준 정립
- CP교육의 참여 증대 제고를 위한 임직원 책임과 권한을 명시
- 공정거래 CP 위반 리스크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제재 기준 정립

[2025.04.30. 개정]

□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 효과적인 공정거래 CP위험성 평가 실행을 위한 기준 수립
- CP효과성 평가의 인력 운영 및 기준에 대한 명시

[별첨1]

※ 공정거래 우수 실천리더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요소		배점(점)	단위	비고
정량 평가	기본 점수	기본 부여	100	-	-
	감점 요소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공정위)	-100	건당	공정위 처분 공문 도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자체점검)	-5	건당	법무섹션 주관 점검
		공정거래 하도급 분쟁 발생	-10	건당	포스코(플로우), 공정위, 국회, 언론사 등 민원 제기 시
	가점 요소	실천리더 주관 그룹 자체점검	10	회당	최대 40점 (결과보고서 등 확인 시)
		실천리더 주관 교육	5	회당	최대 20점 (출석부, 사진 등 확인 시)
		실천리더 소속 그룹 공정거래 교육 수료율 (러닝플랫폼 공정거래 필수 교육)	1~3	수료율	· 수료율 100%(가점 3점) · 수료율 95% 이상(가점 2점) · 수료율 90% 이상(가점 1점)
		공정거래 법 위반 자진시정	5	건당	자진 시정 限
	정성 평가	정량평가에서 동점인 경우, 우수 그룹으로 선정된 그룹의 실천리더가 수상			법무섹션 결정

[별첨2]

※ 공정거래 CP위반 제재 기준

○ 양정 기준

조사 주체	양정 대상	위반행위	양정	비고
공정위	신고접수/직권조사	공정위 처분 공문 도달 시	징계 등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공정위/조정원 접수 후 합의	공정위 조사과정 중 발견된 명백한 법 위반 (서면 미발급, 대금인하, 부당특약 등)		